

# 1. 학점 및 성적

## 가. 학점 인정기준

- 1) 학점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하며, 실험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특별한 교과목은 한 학기에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국내외 학점교류시의 학점인정
  - 가) 국내외 타 대학과의 교육교류제도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 대학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은 해당 과목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 과목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3) 다음의 교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고 평점평균에는 삽입하지 않는다.
  - 가) 봉사활동
  - 나)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

## 나. 시험

- 1) 매학기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수시평가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수시고사는 학기 중 수시로 성적을 평가(레포트, 과제물, 기타 평가방법)할 수 있고, 기말고사는 필기고사, 실기고사 또는 이를 조합하여 평가한다.
- 2) 수험자격: 교과목 별로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한 자는 수험 자격을 인정한다.
- 3) 추가시험
  - 가) 학칙 제43조(출석인정)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학칙 제43조(출석인정)

3.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4.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 나)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시행 전 또는 해당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에 학생포털시스템에 출석 인정요청 및 시험 결시를 신청하고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단,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 B+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

## 4) 조기사험

- 가) 조기사험 신청 대상자: 군 입대자, 신병, 국가행사(경기)로 인한 해외출장 등으로 기말고사 시험을 기간 내에 치르지 못하는 자
- 나) 수시고사를 필한 후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조기사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2/3이상을 출석하고

조기시험을 신청해야 그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 조기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입대(사유발생)예정일 1주일 전에 조기시험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을 경유하여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정행위의 처벌

- 가)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무효 처리한다.
- 나)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작성하였거나 책상, 벽, 기타 보이는 곳에 자료를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일에 치른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한다.
- 다) 본 대학 재학생간의 대리시험 및 답안지를 교환하였거나, 시험답안지를 외부로부터 반입한 자는 무기정학에 처하며, 해당학기의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한다.
- 라) 타교 학생을 대리시험에 응시케 한 자는 제적처리 한다.

다. 학업성적 평가

1)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한다. 다만, 총장이 교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교과목 구분		상대평가비율
일반교과	교양	A ≤ 30%, A+B ≤ 70%
	전공	A ≤ 30%, A+B ≤ 65%
교직교과, 수강인원 20명 미만 교과, 실험실습실기 교과		A ≤ 40%
교직교과 5명 미만		A ≤ 50%
개인 레슨형 전공실기, 개인(팀)프로젝트, Capstone Design유형 교과		절대평가

2) 성적평가 기준은 학칙에 근거하여 수시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반영하여 부여한다.

- \* RUCK(지역대학연합대학) 원격과목은 수강 대학의 성적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낙제(F)로 처리한다.

3)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백분위 점수	등급	평 점	백분위 점수	등급	평 점
95 - 100	A+	4.5	70 - 74	C	2.0
90 - 94	A	4.0	65 - 69	D+	1.5
85 - 89	B+	3.5	60 - 64	D	1.0
80 - 84	B	3.0	0 - 59	F	0.0
75 - 79	C+	2.5			

\* 평점 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 표기는 취득을 P, 미취득을 NP로 함

4) 성적 산출방법

- 가) 백분위 평균점수 산출방법:  $\Sigma(\text{과목별 취득점수} \times \text{학점}) \div \text{총 신청학점}$
- 나) 평점평균 산출방법:  $\Sigma(\text{과목별 취득평점} \times \text{학점}) \div \text{총 신청학점}$

5) 석차 산출방법

가) 학기석차: 학부별,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 점수에 의해 산출

나) 전체석차: 학부별,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한 전체 이수교과에 대한 성적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산출함. 단, 학부 소속 4학년 학생일 경우 전공별로 전체 등수를 산정함

6) 성적 이의 신청: 학생평가규정 제6조(성적부여 절차)에 의거하여 성적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인스타(inSTAR)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기간 이내에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 7) 학사경고

가)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처분한다.

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이수학점을 15학점(2016학번이후 12학점) 이내로 제한된다.

다) 재학기간 연속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라) 재입학 학생에 대한 학사경고 제적은 재입학 이후의 성적부터 적용한다.

※ 다, 라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적용(ex. 2017-2, 2018-1, 2018-2학기를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2019학년도 2학기에 학사경고 제적 됨)

#### 라. 출석의 인정

1.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 현장견학, 교내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학교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홍보대사로서 학교행사를 지원하는 경우(교내축제, 교내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3)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4)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공휴일 포함 5일, 형제자매: 공휴일 포함 3일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가 취업(채용연계형 인턴 포함)한 경우

6) 체육특기자 및 비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해당기간)/출석일수1/2을 초과할 수 없음

7)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전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신청 불가

8) 학생 본인이 결혼한 경우

9) 그 밖에 총장이 위 3호 및 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2.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포털시스템에 출석인정을 신청한 후 증빙서류를 단과대학(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 학생이 참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관부서가 행사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출석인정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되 제7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1), 2), 6), 8), 9)는 결석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 4), 7)는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5)는 취업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방학 중 취업자는 개강 후 2주 이내)

※ 출석인정 기간은 상기 사유를 모두 합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만 가능하다. 다만 6)의 경우 2분의 1이내로 하며, 5)의 경우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